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식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1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1일

발 의 자 : 노식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노승재·박기재·오현정  
우형찬·이상훈·전병주  
채유미·최 선·추승우  
홍성룡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법률 제 16562호, 2019.8.27.)으로, 총괄사업관리자 및 혁신지구,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,
-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시책발굴, 제도발전,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, 사업시행·관리,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개의 지원기구를 운영 중으로,
-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기관의 범위를 다양한 전문분야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,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수행 업무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,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·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(안 제8조제1항).
- 나.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을 현행 시 산하 투자·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, 지방공사, 시 산하 투자·출연기관,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확대함(안 제8조제2항).
- 다. 효과적인 도시재생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제3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조표

#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,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
2.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·조사
3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
4. 도시재생사업 발굴, 시행 및 관리·운영 등 지원
5. 도시재생사업 지역 관련 모니터링
6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

따라 지정·고시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

4.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 
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 
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)</p> <p>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할 경우 시 산하 투자·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,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</li> <li>2.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·조사</li> <li>3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</li> <li>4. 도시재생사업 발굴, 시행 및 관리·운영 등 지원</li> <li>5. 도시재생사업 지역 관련 모니터링</li> <li>6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</li> </ol>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
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

4.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

〈신 설〉

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(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원 등)을 개정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≙ 1,500,000천원(연평균 300,0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,0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도시재생실에서 추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
  - 도시재생지원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기관이 선정될 예정임
  - 사업비의 규모도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재생실에서 임의 추정한 것을 적용함
  - 물가상승률, 사업의 확대 등은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800,000천원
  - 총비용 = 표지판 설치비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	합계
구분	세입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구분	세출						
	업무 수행 필요 비용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소계 (b)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□ 총 비용 (b-a)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
$$\bigcirc \text{ 업무 수행 필요 비용} = \sum_{i=1}^5 (\text{업무 수행 비용})_i$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
- 연간 업무 수행 비용  $\approx$  300,000천원/년

$\approx$  50,000천원/과제  $\times$  6개/연간

▸ 금액의 추정 : 50,000천원/건(도시재생실 제공)

▸ 과제 건수의 추정 : 6개 과제/연(도시재생실 제공)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     이정수

예산분석관     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